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97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박해철·최민희·박지원  
김 윤·이용선·서미화  
박지혜·박균택·김 현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설치·조성자와 협의하여 기존 부지의 범위에서 현대화·정비 또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그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u>&lt;단서 신설&gt;</u></p> <p>5. (생략)</p>	<p>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p><u>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대화·정비 또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5. (현행과 같음)</p>